

## 편집 및 심사 규정

제정 2016.01.01. 규정 제1호

개정 2018.11.08. 규정 제2호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『연구방법논총』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

**제2조 (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)** 편집위원회는 12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.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이 가능하다.

**제3조 (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)**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소장은 학문적 경력, 전공분야, 소속기관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. 업무를 총괄할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 역할을 할 선임위원을 호선한다. 단, 초대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지명한다.

### 제4조 (편집위원회 역할)

1.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.
  - 가. 논문의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
  - 나.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
  - 다.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
2.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.

### 제3장 『연구방법논총』 발간

#### 제5조 (기고 논문의 접수)

1. 『연구방법논총』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JAMS 웹사이트(<http://polisci.jams.or.kr/>)를 통해 투고한다 (2018.11.08. 개정).
2. 『연구방법논총』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, 타 학술지나 잡지 혹은 인터넷 등 매체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3년 동안 『연구방법논총』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다.
3. 제출 원고는 『연구방법논총』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.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4.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
5.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『연구방법논총』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서 반송할 수 있다.
6. 각 호 논문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.  
1호-1월 말일, 2호-5월 말일, 3호-9월 말일(2018.11.08. 개정).

#### **제6조 (논문 게재 신청 자격)**

1.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(재학생 포함)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
2. 편집위원회에 의해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
3. 편집위원은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#### **제7조 (논문 게재 횟수)**

1. 논문투고자는 각 집(輯)당 1회에 한해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.
2. 각 집에 이미 단독 논문을 게재한 게재자는 해당 집에 1회에 한해 공동 논문을 추가 게재 할 수 있다.

#### **제8조 (논문 게재자의 의무)**

1.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에 대해 게재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논문 게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.

2.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추가로 게재료를 요구할 수 있다.
3.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『연구방법논총』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 하에 본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.

#### 제9조 (발간 예정일)

『연구방법논총』은 연 3회 발간하며, 1호는 3월 31일, 2호는 7월 31일, 3호는 11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(2018.11.08. 개정).

###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

**제10조 (초심)** 편집위원장은 매달 편집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상황을 알리고,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 위촉을 논의한다. 단,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제외한 편집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한다.

1. 심사위원 위촉- 편집위원들과 논의하여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2. 심사의뢰-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 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.
3. 기일- 초심 결과는 3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4. 판정기준-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, ‘가,’ ‘수정후 게재,’ ‘재심 후 게재여부 결정,’ ‘게재불가’의 판정을 내린다.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.

심사자 갑	심사자 을	심사자 병	심사결과
가	가	가	게재 가
가	가	수정 후 게재	
가	가	게재 불가	
가	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
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	
가	수정 후 게재	게재 불가	재심 후 게재여부 결정
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	게재 불가	
가	게재 불가	게재 불가	게재 불가
수정	게재 불가	게재 불가	
게재 불가	게재 불가	게재 불가	

**제11조 (재심후 게재여부 결정)** 초심 결과, '재심 후 게재여부 결정'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.

1. 심사의뢰-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편집위원이나 새로 지정한 심사위원 1인에게 초심결과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. 이 때 심사는 '게재' 혹은 '게재불가'만으로 판단하도록 한다.
3. 기일- 재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.

**제12조 (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)**

1.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. 『연구방법논총』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했던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.
2.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는 '재신청'임을 명기해야 한다.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.

**제13조 (이의제기)**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 단, 심사 결과에 대해 논문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

절차를 두지 않는다.

## 제5장 기타 규정

**제14조 (인쇄와 발간)**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발간-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.
2. 이월게재-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.

**제15조 (게재증명과 표절처리)**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.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『연구방법논총』 저술윤리 강령에 의해 처리한다.

**제16조 (편집위원 윤리)**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,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## 부칙

본 규정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정관 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.